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30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